



## 인도네시아 세무 안내

### 조기환급과 관련한 규정개정

재경부장관은 ("MoF") 특정 기준을 충족한 납세의무자 (Golden Taxpayers) 와 소액 환급대상자 및 저 위험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의 조기지급에 관한 재경부장관령 No.39/PMK.03/2018 ("PMK-39")을 발표하였습니다. 과거 이러한 조기환급 혜택은 각각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었으나, 경제성장의 촉진과 특정활동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의 재무건정성을 향상하고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경부 장관은 최근 PMK-39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적용가능한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번 세무 안내는 PMK-39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신청 자격

해당 세제혜택을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아래에 요약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번호:

1. 조기 환급과 관련한 규정개정
2. 원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통합감사 방안
3. 사방(Sabang) 자유 무역 지구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품판매세 면세절차

제목	특정 기준 납세자 (Golden Taxpayers)	소액환급 대상자	저위험도 과세대상 사업자
기준 / 해당자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 a) 신고서지연제출이 없어야 함 b) 체납세가 없어야함; c) 최근 3년간 감사의견 적정; 또는 d) 최근 5년간에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a)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자가 아닌 개인 납세의무자 (환급액 제한 없음); b) 사업 소득/ 자유직업소득자인 개인납세의무자가 연간 소득세신고서에 IDR 1억(100 million) 이하의 환급을 청구한 자; c) 법인세 신고서에 IDR 10억(1 Billion) 이하의 환급을 청구한 법인; 또는	다음 활동을 하는 PKP: a) 수출 활동; b)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사업자에게 공급; c) 0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

제목	특정 기준 납세자 (Golden Taxpayers)	소액환급 대상자	저 위험도 과세대상 사업자
		<p>d) IDR 10억 (1 Billion)이하의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신청한 과세대상 사업자.</p>	<p>저위험도 과세대상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법인;</li> <li>b)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유한 기업;</li> <li>c) 관세혜택 보유기업 (MITA);</li> <li>d) AEO 인증기업;</li> <li>e) 직전 12개월간 부가세 지연신고 사실이 없어야 함. ; 또는</li> <li>f) 매월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IDR10억 (1 Billion) 이하인 경우.</li> </ul> <p>해당 과세대상 사업자는 조세범칙과 관련된 조사 또는 세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는 제외됨. 또한 최근 5년간 조세분야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p>
조세레택 수여의 확정절차	신청서는 1월10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관서는 1개월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발행하여야 함.	별도의 확정절차가 없음.	신청서는 상시제출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해당 관서는 15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발행하여야 한다.
확정자격의 유효기간 및 취소	부여된 자격은 아래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무제한으로 적용된다.: 1) 연간 소득세 신고서의 지연 제출; 2) 월별신고서를 연속으로 2과세기간동안 지연제출(MTR) ; 3) 월별신고서를 1년 간 비연속적으로 3과세기간동안 지연제출 ; 또는 4) 조세범칙조사 또는 세무수사가 시작되는 경우.	해당 없음.	부여된 자격은 아래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무제한으로 적용된다.: 1) 조세범칙조사 또는 세무수사가 시작되는 경우; 2) 조세 범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or 3) 기 언급한 저위험도 과세대상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조기환급의 지급절차**

조기환급을 요청하는 자는 해당 신고서의 환급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세무서("ITO")는 해당 환급 신청에 대하여 서면검증을 실시하고 다음 기한 내에 조기환급 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a) Golden Taxpayers: 소득세 3개월, 부가가치세 1개월 이내;
- b) 소액환급 대상자: 개인납세의무자인 경우 15영업일 이내 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우 1개월 이내;
- c) 저위험도 과세대상 사업자: 1개월 이내.

환급통지된 금액이 당초 요청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별도로 재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환급에 따른 사후조치**

과세관청은 조기환급을 수령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한인 5년이내에 세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a) Golden Taxpayers: 과소납부액의 100% ;
- b) 소액환급 대상자: 과소납부액의 100% ;
- c) 저위험도 과세대상 사업자: 월별 2%(최대 48%)

그러나 Golden Taxpayer 또는 소액환급 대상자라도 저위험도 과세대상 사업자로 확정되어 환급을 수령한 경우에는 월 2% (최대 48%)의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 **경과 규정**

PMK-39는 다음과 같은 경과 규정을 시행합니다:

1. 기 신청하였으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특정기준 납세의무자로 확정받지 못한 자는 2018년 4월 12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있다.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관서는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2018년 4월 12일 현재 유효한 특정기준 납세의무자 또는 저위험도 과세대상사업자의 지위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는 이 장관령의 공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 지정 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3. 진행 중인 조기환급 신청은 이전 규정에 따라 계속 처리된다.
4. 기존의 조기환급에 관련한 규정은 PMK-39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한다.

PMK-39는 2018년 4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아래와 같은 규정/법령은 폐지 된다:

1. 부가가치세가 조기환급 되는 저 위험도 과세대상 사업자에 대한 재경부장관령 No. 71/PMK.03/2010;
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절차와 관련한 재경부장관령 No. 72/PMK.03/2010 제5조부터 제7조까지;
3. 보세 구역 및 그 개정 사항에 대한 재경부장관령 No. 147/PMK.04/2011 제18A조;
4. 조기환급되는 특정기준 납세의무자에 대한 선임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재경부장관령 No. 74/PMK.03/2012; 또한
5.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기환급 재경부장관령 No. 198/PMK.03/2013.

### **원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한 통합감사 방안**

정부와 생산물 분여 계약을 체결한 원유 및 가스 시추계약자에게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경부장관은 과세관청, 행정감사원(BPKP) 및 원유 및 가스 사업에 대한 특별 관리부서(SKK Migas)에 의한 통합감사 방안을 마련하고 재경부장관령 No. 34/PMK.03/2018 ("PMK-34") 에 공표하였습니다.

PMK-34는 감사기획, 감사 기준 및 감사 절차를 포함하여 위에 언급된 관계당국의 통합감사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독립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a) 법인세가 환급 신고된 경우 – 세무서는 12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고 세액확정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b)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소득이 신고되었으나 그 내용이 4/4분기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또는
- c) 법인세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또한 과세관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납세 의무(예.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사치품판매세, 재산세)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별도의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실시됩니다.

PMK-34는 2018년 4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 **사방(Sabang) 자유 무역 지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판매세 면제절차**

재경부장관은 다른 자유무역지구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또는 사치품판매세(LGST)를 사방 자유 무역 지구에서도 부과하지 않기 위하여 해당 절차에 대한 재경부장관령 No. 41/PMK.03/2018 (“PMK-41”)를 발행하였습니다. 동 구역에 대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조치는 세관 통보서(PPFTZ-03)에 대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승인이 부여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위 승인을 위하여 세무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1. 세금계산서;
- 2. 선하 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또는 인도 지시서; 또한
- 3. 매출 인보이스.

만약 세무관서의 유효한 승인이 없는 경우부가가치세 또는 사치품소비세가 부과됩니다.

PMK-41는 2018년4월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연락처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should be directed to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Tax Partners:

<b>Melisa Himawan</b> Tax Managing Partner	Business Tax and Corporate License	mehimawan@deloitte.com
<b>Balim</b>	Transfer Pricing	bbalim@deloitte.com
<b>Cindy Sukiman</b>	Business Tax	csukiman@deloitte.com
<b>Dionisius Damijanto</b>	Business Tax	ddamijanto@deloitte.com
<b>Heru Supriyanto</b>	Business Tax	hsupriyanto@deloitte.com
<b>Irene Atmawijaya</b>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atmawijaya@deloitte.com
<b>John Lauwrenz</b>	Business Tax	jlauwrenz@deloitte.com
<b>Roy David Kiantiong</b>	Transfer Pricing	rkiantiong@deloitte.com
<b>Roy Sidharta Tedja</b>	Business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oytedja@deloitte.com
<b>Turmanto</b>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Custom & Global Trade	tturmanto@deloitte.com
<b>Yan Hardyana</b>	Business Tax	yhardyana@deloitte.com

##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sup>nd</sup>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tl@deloitte.com](mailto:iddt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http://www.deloitte.com/id)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64,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http://www.deloitte.com).

#### **About Deloitte Southeast Asia**

Deloitte Southeast Asia Ltd – a member firm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comprising Deloitte practices operating in Brunei, Cambodia, Guam, Indonesia, Lao PDR,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 was established to deliver measurable value to the particular demands of increasingly intra-regional and fast growing companies and enterprises.

Comprising approximately 340 partners and 8,800 professionals in 25 office locations, the affiliates of Deloitte Southeast Asia Ltd combine their technical expertise and deep industry knowledge to deliver consistent high quality services to companies in the region.

All services are provided through the individual country practices and their affiliates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

*This publ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publ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publication.*